

2023년도 제7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4. 13.(목),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하병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71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677건(안전번호 제2023-18197호~18873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3-18197호는 불법복제물 제공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게시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18198호~18213호는 음악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시정권고의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18214호는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게시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18215호~제2023-18263호는 블로그에 뮤지컬의 무단 촬영 영상 등 판매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18264호~18276호는 웹하드 및 블로그, 카페에서 불

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 중인 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번호 제2023-18277호~18873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7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7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2023-71회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 및 기타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참석위원 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에 대해 만장일치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음.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전상정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으신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됨. 각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척사유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해당 안건 심의시 사유를 밝히고 회피하여 주시기 바람.
 - 참석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24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093건의 불법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 2023-18197호~18873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 하겠음.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3-18197호는 민원인(실명 1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에 불법불법물 제공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사안 총 1건 임.

(안건번호 제2023-18197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만화 '♡♡♡ ♡♡'의 최신화 표지와 함께, 불법불법물 번역본을 제공하는 해외사이트 '★★★★★'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게시하고 있음.

안건번호 제2023-18197호의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불법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만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불법불법물을 직접 전송 중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심의대상 게시물의 링크를 '저작권이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로 보아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불법물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문제됨.

우리 심의위원회는 게시자에게 불법행위 방조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에 준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한편 불법불법물을 직접 전송하는 '★★★★★'는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온라인서비스로서 우리 심의위원회의 시정권고 대상이 되지 않음. 따라서 링크게시물의 경우 불법불법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되도록 원천게시물에 직접 시정권고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시정권고 이행이 가능한 국내 온라

인서비스에 소재한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함으로써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차단할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따라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3-18197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8197호의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18198호~18213호는 민원인(실명 1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에 애니메이션 '●●●● ●●●● ●●●● ●●●● ●●●●'의 주제곡

과 OST를 스트리밍 형태로 게시한 사안 총 16건임.

(안전번호 제2023-18198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 ●● ●●●● ●●●● ●●’ OST의 46번~48번 트랙을 스트리밍 형태로 게시하고 있음. 해당 음반은 ‘▲▲▲’ 등에서 CD로 판매중이며, 일본 현지 및 해외를 통틀어 디지털 형태로는 판매되고 있지 않음.

안전번호 제2023-18198호~18213호의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B 위원: 순번 1번과 동일한 민원인이 신고한 게시물들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동일한 게시판에 게시된 불법복제물을 동일인이 신고하였음.
- B 위원: 해당 게시판 현황을 시연해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게시된 게시판을 시연함) 해당 게시판의 각 카테고리에서 순번 1번 내지 17번 게시물 이외에도 다른 불법복제물이 다수 게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음.
- B 위원: 앞선 순번 1번의 참고사항에 의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

한 시정권고가 가결될 경우 재택근로자를 통해 해당 사이트 내 다른 불법복제물의 모니터링을 보호원이 직접 진행 예정이라고 함. 심의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3-18198호~18213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8198호~18213호의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18214호는 민원인(실명 1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블로그에 애니메이션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를 게시한 사안 총 1건임. (안전번호 제2023-18214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 ■■■'이라는 제목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 ♡♡♡'의 해당 시즌 전편을 직접링크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하여 감상할 수 있음.
안전번호 제2023-18214호의 심의대상 게시물은 직접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

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3-18214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8214호의 심의대상 게시물은 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18215호~18263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뮤지컬의 밀캠, DVD, 온라인 생중계 녹화 영상 등을 ●●● 블로그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사안 총 90건임.
(안전번호 제2023-18216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의 목록이 게시되어 있으며, 게시자는

백여 개의 비밀댓글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고 있음.

안전번호 제2023-18215호~18263호의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3-18215호~18263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8215호~18263호의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18264호~18276호는 민원인(실명 3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 및 블로그, 카페에 게시된 만화·게임·영상(방송, 영화)의 불법복제물 총 44건임.

(안전번호 제2023-18267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웹하드에서 게임 '▼▼▼ ▼▼'를 제공 중임. 저작물의 실행파일을 다운로드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

(안전번호 제2023-18275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카페에서 영상 (방송) '◆◆◆◆◆ ◆◆◆◆◆ ◆◆◆◆◆' 1화를 제공 중임. 전체분량 27분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해당 안전번호 제2023-18264호~18276호의 44개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3-18264호~18276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8264호~18276호의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제2023-18277호~18275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모두 불법복제한 영상물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만화 ‘(만화)체인소 맨’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 2023-18450호는 웹하드에서 “(만화)체인소 맨’을 50포인트에 판매 중임. 2018. 12. 3부터 일본에서 연재중인 출판 만화임.

(영화 ‘(영화)파벨만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 2023-18545호는 웹하드에서 ‘(영화)파벨만스’를 370캐시에 판매 중임. 2023. 3. 22. 극장 개봉한 영화임.

(출판 ‘(웹소설)화산귀환’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 2023-18682호는 웹하드에서 ‘(웹소설)화산귀환’을 50포인트에 판매 중임. 2019. 4. 25부터 네이버 시리즈에서 연재중인 웹소설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3-18277호~18275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안전번호 제2023-18277호~18275호는 모두 불법 복제
한 영상물,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
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8277호~18275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
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3-18197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18198호~18213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18214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18215호~18263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18264호~18276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18277호~18873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7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7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4. 20.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하병현